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9고단2301 판결 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2301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최우석(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현석(국선)

판결선고 2019. 8. 16.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범죄사실

###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00: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비밀번호 등 잠금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9.~3.~2.~02:37경부터 10:37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등지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자기 가슴 보내줘", "F내용 보고 지려따", "남자친구 헌팅 존내 하고 외국여자들이랑 자고 그러네", "가슴좀", "가슴사딘 ", "사진좀"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각 수사보고
- 1. 진술서, 관련 통화(F문자) 내역 사진, 관련사진, 관련내역사진, CCTV 관련사진, 체크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제2항의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고 아니하므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박강민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